

Mercedes-Benz Financial

www.mercedes-benz-financial.co.kr

- * "갑"이 차량 구매를 요청한 경우 "갑"은 자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전 등록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갑"이 리스만으로 또는 중도해지일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록 업주는 "을" 또는 "을"이 대리인(대행)으로 한다.
- 중도해지비용은 "갑"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규정순실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리스기간 만료를 이유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리스기간 만료시점의 잔존가치와 유예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시 반드시 "갑"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리스 중도해지의 금지

- 금융리스의 경우 "갑"은 원칙적으로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 계약을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을"이 동의한 경우 "갑"은 제23조의 규정 순실금을 포함하여 "갑"의 중도 해지에 따른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을"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21조】반납차량 규정

- "갑"이 계약에 의해 리스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이 지정된 평가기관은 반환차량의 현재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갑"에게 자동차 평가표를 교부하며, 별첨 "차량평가 및 평가기준"에서 정한 평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한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자동차 감가 사유를 입증할 때는 경우 (보험수급 경력 등), "갑"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사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리스차량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을"은 "갑"에 의한 리스차량의 반납을 기정하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차량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을" 또는 "을"의 대리인에게 차량의 리스하자 및 수리사항을 은폐하거나 조작, 또는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리스차량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차량상태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화상회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 반납시점의 리스차량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갑"과 "을"이 약정한 자동차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갑"은 제 26조에 따른 초과 운행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2조】중도해지수수료

- 운용요금 상동시 경우 "갑"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갑"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리스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리스실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리스실행일로부터 25개월 이후
차량가격의 40%	차량가격의 30%	차량가격의 20%

* 차량가격이라 함은 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리스차량의 세급계산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한다.

- 제 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시 "갑"은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본 리스약정서 상 "갑"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 제1항과 2항의 경우 직전 결제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월리스료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 월리스료 X (직전 약결제일로부터 경과일수 / 30)
- 운용요금 상동시 경우 "갑"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갑"은 제 23 조 1항에 따른 규정순실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규정순실금

- 운용리스 상동시 경우 "갑"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규정순실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갑"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 [계액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입금] X 110%
- 중도해지의 중도해지 허용되는 경우, 중도 해지시 규정순실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입금액 ()의 규정순실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규정순실금의 산정기준일 당시 리스료 등 "갑"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전 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그 연체금액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및 "을"이 이 계약서상 채권 및 권리의 보존 또는 행사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순실금으로 한다.
- 규정순실금은 갑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기나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을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한 차량의 반납 및 구매절차를 이행 안 하리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제23조에 의한 규정순실금 기간 만료 이후에는 차량의 잔존가치 및 유예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갑"이 규정순실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차량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 "갑"이 리스료 등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을"이 "갑"을 위하여承擔한 위약의 지급을 연체하는 때, "갑"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대금 비용의 지급기간 다음날부터 만체일까지 한한일수를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연체이지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만체일 중 후만 포함
2. 단,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본 계약서 기재의 이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경제사정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은 변경 전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갑"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면 "갑"은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갑"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이율은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26조】초과 운행부담금

- "을"은 본 계약이 종료(중도해지 포함)된 후 반납된 차량의 운행거리가 계약서 기재의 약정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반납차량 평가시점에 확인된 운행거리에서 차량에 대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여 "갑"은 다음 산식에 의한 초과 운행부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초과 운행부담금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산식을 특정 초과 운행거리에 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초과 운행부담금은 계약서 기재의 잔존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운행 거리(Km)	1만 이하	1만 초과, 2만 이하	2만 초과, 4만 이하	4만 초과
초과 운행부담금(Km 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 리스기간 만료 전에 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약정 운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 운행거리를 산정한다.
- "갑"과 "을"은 특별 약정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을 달리할 수 있다. 단, 제1항과 달리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의 특별사항 기재에 후 "갑"과 "을"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만 유효하다.

【제 27조】반납지연금

-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되었을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 19조에 의한 차량의 반납 또는 구매절차의 완료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 "갑"은 22조에 따라 발생한 중도해지 수수료 (반납의 경우) 또는 23조에 따른 규정순실금 (구매의 경우에) 추가로 "을"에게 차량을 반납 또는 구매절차의 완료일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납지연금 = 월리스료 X 경과일수 X 200%]
 - 제22조 제 1항, 제23 조 1항 또는 28조 제 5항에 규정된 "을"의 권리를 행사하는 전항에 규정된 "갑"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항의 차량 반납 및 차량의 반납 및 제 22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또는 제 23조 제5항에 따른 "을"의 차량 강제회수일을 기하여, 차량의 구매절차 완료는 소유권 이전 및 23조에 따른 규정순실금 (구매의 경우)의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간주한다.
- 제21조(반납차량 평가)의 평가, 제22조(중도해지수수료), 제23조(규정순실금), 제25조(지연배상금), 제26조(초과 운행부담금), 제27조(반납지연금), 제10조(유예금), 제11조(차량의 유지·비용 및 세급계산)규정 사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합계(이하 "정산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규정한 정산금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갑"은 정산금을 포함되지 않았을 사유로 본 계약서에 따라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정산금 산정 기준일은 본 계약이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되어 "을"에게 차량을 반납할 날 또는 "갑"이 차량을 구매할 날로 한다.
 - "갑"은 기각의 정산금 산정 기준일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정산금이라도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정산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을"은 제 정산금에서 "갑"이 "을"에게 기 지급한 보증금 및 제9조 제3항에 의한 잔여 선납금을 상계한 후 잔여 금액을 "갑"에게 청구 내 지 반환하기로 한다.
 - 제 1항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납 및 구매절차의 완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을"이 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을"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차량 강제회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을"이 지당한 법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을"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한, "을"에게 보증금 및 선납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28조】정산서 작성

- 본 계약이 리스기간 종료 후 "갑"과 "을"간에 차량을 제3자로 함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점의 차량의 잔존가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 제3자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행차 차가 발생하면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제3자에게 함의를 체결하기로 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의 경우, 유예금이 있을 경우, "을"은 정산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유예금을 제3자 금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 제28조 기간은 차량의 전내내용인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제3자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30조】공동리스이용자

- "을"이 실행하는 리스과 관련하여 "갑"은 리스 신청 및 계약을 공동리스 이용자 할 수 있다.
- 공동리스 이용자는 리스(운전자)연대하여 리스료 및 리스 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은 공동리스 이용자 모두에게 리스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공동리스 이용자로 계약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갑"과 공동리스 이용자가 책임진다.

【제31조】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은 리스료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본 계약과 "갑"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갑"이 "을"의 동의없이 리스 계약의 채무 제 3자로 하려고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본 계약 체결 때까지 보증하지 않기로 한다.
- 연대보증인은 계약에 의한 "갑"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연대, 대물변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 시키는 행위 등으로 본인만 "을"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본 계약상의 "갑"의 미변제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을"에 앞서 행사하지 않으며, "을"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을"의 다음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 연대보증인이 "갑"의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 외의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 본 계약에 따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과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대 보증인이 그 변경계약서에 별도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여도 그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변경된 계약내용이 보증인에게 불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증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한다. 본 계약의 보증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표시한 경우 "갑"은 "을"을 "을"으로 따라 보증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연대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보증한 가처 이상의 담보제공,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채무자의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상 필요도 없이 "을"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 해제할 수 있다.
- 기타 연대보증인에 관련한 사항은 여신거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32조】담보의 제공

- "을"은 "갑"의 "을"에 대한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담보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을"이 여신거래약관 6조에 따라 정하는 내용에 따르기로 하며, 여신거래약관 4조에 따라 담보제공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을"은 갑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된 담보물의 담가치등의 감소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갑"에게 제3항의 담보 이외의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즉시 "을"이 만족하는 담보 또는 보증인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조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본 계약 외의 모든 "을"에 대한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담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신거래약관 6조 및 기타 관련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통지의무

- "갑"과 "을"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을"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갑" 또는 "갑"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차량에 대한 본담, 손실,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3. 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제34조】권리의 양도 및 승계

- "갑"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을"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을"은 본 계약약관 및 "갑"의 차량에 대한 사용자승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 또는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을"이 "갑"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 등을 요구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약관의 변경

- 본 약관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에까지 적용 하는 경우 "을"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갑"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갑"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관련서류의 보관

- "갑"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추후 "을"이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리스계약 체결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7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 해당 리스계약정보는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상 기재된 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공공기관 및 제후업체에 제공하여 기존 금액은 취득하기로 산정한다.

【제38조】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을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을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사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9조】해석

-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을"의 여신거래규칙 및 본·지점에 비치된 내규, 금융 관행에 의하기로 한다.

별첨 1

▶ 차량 평가 및 감가 기준

1. 사고유무 및 수리상태

평 가 항 목	최 대 감 가 율
본디 교체, 수리	3%(부위당)
부대 교체, 수리	5%
트렁크 교체, 수리	5%
루프 패널 교체, 수리	10%
휠하우스 수리	10%
도어 교체, 수리	3%(부위당)

- * 반납시 교체 또는 수리하는 값의 부함으로 하고 정비용복 및 감가한다.
- * 반납 이전 이용자가 자비로 교체, 수리시 감가율을 인정하지 않음.
- * 차량가격이라 함은 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리스 차량의 세급계산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한다.

2. 도장 및 판금 상태

평 가 항 목	감 가 율
보통 (1-2판넬 비정상)	1%
불량 (3-4판넬 비정상)	2%
매우불량 (5판넬 이상 비정상)	3% 이상

- * 비정상이란 균열, 벗겨짐, 벗겨짐, 해어짐이나 들이거짐, 색깔변조 등, 동전크기 이상의 찍힘, 우그러짐, 부분스프레임, 부식 등 심각한 차량상태로 심한 경우를 말한다.

- * 차량가격이라 함은 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리스 차량의 세급계산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한다.

별첨 2

▶ 자동차계약이체약관

- 예금주 본인인(이하 이약관에서 "본인") 귀사와 약정한 지급일(해당 지급일이 금융기관이 영업하지 아니하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귀사가 청구하는 금액(이하 "이체금액")을 본인이 이 약정서에서 지정된 계좌(이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1항의 납부를 위하여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업권이나 계좌개설금융기관과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주로서나 수표없이 지정된 자동차계약이체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해도 의의가 없습니다.
- 이체금액은 지급일 계좌개설금출기관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지급일에 지정계좌에 예금잔액(이하 계좌개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다음 포함)이 이체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은 2영업일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이체 처리됩니다. 이때, 이체금액이 모두 이체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이 약정서 또는 리스약관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 본인의 지정계좌에 예금잔액이 제1항의 자동차계약이체일 현재 귀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자동차계약이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인은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리스계약 (세급공과금)의 리스이용자 부담 의무에 따라 리스계약기간만료 이전 또는 소유권 미이전 시점에 발생한 세급공과금(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납부를 위하여 리스계약기간의 자동차계약이체일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특정 일자에 귀사가 세급공과금 (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정계좌에서 출금하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 6.세세 공과금 (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이체대당금액은 지급일 계좌개설금출기관의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지급일에 지정된 예금잔액 (이하 계좌개설금출기관과의 사이에 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다음 포함)이 이체대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은 2영업일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이체 처리됩니다. 이때 이체예정금액이 잔액 이체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기존 리스계약약관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항의 자동계좌 이체 일일 귀사 및 다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개의 자동차계약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그액과 해당 계좌개설금출기관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겠습니다.
- 본인이 이 약정에 동의 자동차계약이체납부의 개설일이 귀사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9.이체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수수료 등은 모두 본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10.본인이 귀사에 제공한 자동차에 대한 동등한 리스계약의 만료에 따른 차량의 반납 또는 구매 (소유권 이전)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자동차계약, 만약 사고가 사유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귀사가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잔존 채권 (세세 공과금 포함)이 있는 경우, 귀사의 무통장 입출 요청 없이 본인 및 동등한 리스계약의 만료 이후에도 동의합니다.
- 11.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리스계약서 약관 및 계좌개설금출기관이 정하는 약관 및 내규를 준용합니다.